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01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12월 7일
발 의 자 : 정택진 의원
찬 성 자 : 이인락, 임준희,
공기환, 이재식,
조진호 의원 (5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므로, 의회에서 복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수당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직의 정의와 구분을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 나.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 라. 기 타
 - 1) 조 례 안 : 별첨
 - 2) 조례안 예고 : 2021. 12. 8. ~ 2021. 12.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일·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당직”이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수당지급)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일·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숙직 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